

2025년도 제3회 강진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

2025년도 제3회 강진군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
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8일

강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강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2. 채용분야 및 인원

분 야	임용직급	인원	임용 기간	직무내용	근무처
화훼 전문요원	지방농촌 지도사 (일반임기제, 7급상당)	1명	2년	○ 계절별 우량꽃묘 생산 및 보급 관련 업무 ○ 축제 및 행사용 꽃묘 생산 및 행사장 조성 관련 업무 ○ 꽃묘(초화류, 국화) 농가 위탁생산 관련 업무	농업 기술센터

※ 임용기간은 추후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
3. 응시자격요건

가. 공통 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
되지 않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
아니한 사람

《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》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《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》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- 주소·성별 : 제한 없음
-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※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)
 - ※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나. 임용분야별 자격기준

임용분야	자격요건
화훼 전문요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학과 : 농학과, 원예학과 등 ○ 관련분야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분야 등에서 화훼분야(꽃묘 생산 및 보급, 꽃단지 조성 등) 업무를 담당한 경력 ※ 우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·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· 농촌지도사 또는 농촌지도사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※ 경력의 계산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다. 자격기준 제한 사유 : 해당 분야 전문인력 적격자 선발

4.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

가. 보 수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의 능력·자격·경력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%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근무시간
화훼전문요원 (일반임기제, 7급상당)	68,388	48,572	주40시간

나. 기타 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의거 별도 지급

5. 시험방법 : 서류전형, 면접시험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분야 관련 자격·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 - ※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)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실시
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및 적격성 검증
- 5개 면접 평정항목에 대하여 개별 면접
- * (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** (불합격)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
다. 최종합격자 결정 : 면접시험 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

6. 응시원서 접수

가. 응시원서 :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사용

나. 접수기간 : 3. 26.(수) ~ 3. 28.(금) 0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 / 3일간

다. 접수처 :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(본청 2층)

○ 우59228,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

라. 접수방법 : 방문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○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최종일 마감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함

○ 응시수수료(7천원)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접수

※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,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

7. 채용일정

가.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: 3. 31.(월) 예정

나. 면접시험 : 4. 3.(목) 예정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4. 4.(금) 예정

※ 공고 및 발표는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

※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시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보

8. 응시자 제출서류 : 붙임

가. 응시원서 1부(별지 서식)

- 응시수수료(7천원)는 강진군수입증지를 구입 후 첨부(강진군청 민원봉사과)
※ 등기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

나. 이력서 1부(별지 서식)

- 자격, 경력 등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
-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가 미첨부되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
다. 자기소개서 1부(별지 서식, A4용지 2매 내외)

라.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서식, A4용지 10매)

- 반드시 요약서 2매 내외 첨부

마.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)

바. 최종학력증명서 1부(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)

- ※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동일 계통학과 증명서(붙임 서식) 제출

사.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
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- 근무기간, 직위 및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
- 비정규·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(미제출시 불인정)
- 발급기관의 직인, 발급 담당자 성명, 서명(날인),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
-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를 함께 제출
-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,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*로 보완해야 함

- * ❶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 내역 등)
- ❷ 폐업사실증명서 ❸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❹ 소득금액증명서
→ ❶, ❷, ❸, ❹ 모두 제출하여야 함

아. 자격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
자.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(원본)

- 국민건강보험(www.nhic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-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

차.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(별지 서식)

- 카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 서식)
- 타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(별지 서식)
- 파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별지 서식)

※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▶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▶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
- ▶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(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도 인정)에 한하며 인정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)내의 서류여야 함
- ▶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문(공증필)을 첨부하여 제출
- ▶ **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**

9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 중 원본서류는 요청 시 반환(접수된 사본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)하며,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, 채용절차 진행 상 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다.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라.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마.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.
- 바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사. 응시자 중 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아.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자.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채 용 :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(☎ 061-430-3713)

- 직 무 :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(☎ 061-430-3631)